

성 남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시보

선
람

기 관 의 장

제2034호

2025년 11월 26일 (수)

차 례

고 시

◦ 성남시 고시 제2025-389호 성남동 270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..... 2

회 란

발행: 성남시 편집: 공보관

성남동 270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70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1월 26일
성 남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나. 명 칭: 성남동 270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709번지 일원
- 나. 면 적: 7,865.59㎡

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합의 명칭: 성남동 270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장정순)
- 나. 사무소 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694번지 2층

4. 조합설립인가일: 2022. 1. 26.

5. 조합설립인가 취소일: 2025. 11. 26.

6. 조합설립인가 취소사유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(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) 제2항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함